**슈팅스타 동아리 회칙**

**제 1장 총칙**

**제 1조 [동아리 명칭]**

① 본 동아리의 명칭은 “슈팅스타”로 한다.

**제 2조 [목적]**

① 본 동아리는 활력 넘치는 치어리딩 공연을 통해 관중에게 에너지를 전달하며, 부원들의 자신감 및 자부심을 고취하고 학교의 위상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 3조 [동아리 소재]**

① 본 동아리의 소재지는 숭실대학교 동아리연합회가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.

**제 2장 임원진 및 집행부**

**제 1조 [임원진의 임기]**

① 임원진은 회장, 부회장으로 정의한다.

② 임원진의 임기는 약 1년으로 한다.

**제 2조 [임원진 선출 방식]**

① 임원진의 선출은 1차 서류, 2차 임원진 내 논의로 선출된다.

② 임원진 후보 부재 시 기존 임원진이 회의 후 추천 혹은 임명한다.

③ 임원진의 판단에 따라 총회에서 회원의 투표에 의해 선출될 수 있다.

**제 3조 [임원진]**

① 회장은 동아리의 책임자로서 부원 관리, 안무 제작, 연습 관리, 공연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며, 동아리 내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.

②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조하고 회비 관리, 연습실 대관, 안무 제작, 연습 관리 등을 수행한다. 또한 회장 부재 시 회장의 업무를 수행한다.

**제 4조 [집행부]**

① 집행부는 임원진과 집행부원으로 구성되며, 집행부원은 임원진이 선임한다.

② 집행부는 훈련부장, 기획부장, 홍보부장으로 구성되며, 기획부와 홍보부는 2명 이하의 부원을 선발할 수 있다.

③ 집행부는 각 호에 해당하는 권리를 가진다.

1. 동아리 내 의결 사안을 제시할 수 있다

2. 동아리 내 의결 사안 결정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.

④ 훈련부장은 연습 관리, 활동보고서 작성 업무 등을 수행한다.

⑤ 기획부장은 외부 행사 조사, 엠티 기획 등을 수행한다.

⑥ 홍보부장은 음원 편집, 연습 영상 촬영, SNS 게시물 관리 및 제작 업무 등을 수행한다.

**제 5조 [집행부 회의]**

① 집행부 회의는 임원진과 함께 월 1회 이상 진행한다.

② 집행부 회의는 반드시 문서로 기록해야 한다.

**제 3장 회원**

**제 1조 [회원 자격 및 의무]**

① 슈팅스타 회원은 숭실대학교 재, 휴학생이어야 한다.

② 슈팅스타 회원은 정규 연습 및 공연에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,

③ 슈팅스타 회원은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공연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.

**제 2조 [회원의 가입]**

① 본 동아리의 회원 모집은 연 1회, 3월 초에 진행한다.

② 1차 서류와 2차 오디션을 통해 회원을 선발한다.

③ 임원진 및 집행부의 판단에 따라 학기 중 혹은 방학 중 회원 모집을 진행할 수 있다.

**제 3조 [회원의 탈퇴]**

① 탈퇴를 희망하는 회원은 집행부에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탈퇴가 성립된다.

② 동아리 회원이 탈퇴할 경우 가입 시 납부한 회비 및 기타 비용은 환급하지 않는다.

**제 4장 회의**

**제 1조 [정기 모임]**

① 동아리의 정기 모임은 주 2회 이상으로 한다.

② 정기 모임은 전 회원이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③ 학기 중 8주차, 15주차는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실시를 고려하여 정기 모임을 진행하지 않는다.

**제 2조 [총회]**

① 총회는 연 2회, 매 학기 초에 진행한다.

② 총회는 연 활동 계획 공지, 회비 내역 공개, 질의응답 등의 사항을 포함한다.

③ 총회는 회원의 절반 이상이 참석 가능한 일시에 진행한다.

④ 임원진의 판단에 따른 긴급 총회가 발생할 수 있다.

**제 5장 재정**

**제 1조 [수입]**

① 동아리 가입비, 단복비, 공연 지원금, 벌금 등으로 발생한 동아리의 수입은 회비로 정하며, 이는 활동비로 사용된다.

**제 2조 [회비]**

① 본 동아리의 모든 회원은 임원진이 지정하는 일정액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.

② 모든 회원은 매 학기 활동비 30,000을 납부해야 한다.

③ 모든 회원은 매년 단복 이용비 40,000원을 납부해야 한다.

**제 3조 [결산보고]**

① 회장은 총회에서 당 학기의 결산보고를 해야 한다.

② 회비 관리자는 회비 이용과 관련된 모든 내역을 기록하고 공개해야 한다.

**제 6장 동아리 등록**

**제 1조 [등록]**

① 동아리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숭실대학교 학칙 및 동아리연합회 회칙에 따른다.

**제 7장 부칙**

**제 1조 [회칙 발효]**

① 각 개정안의 개정 회칙은 다음 개정일부터 시행한다.

초판 [2024.03.26]

**제 2조 [회칙 개정]**

① 본 동아리의 회칙 개정은 총회에서 회원의 투표에 의해 개정될 수 있으며 출석 인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이어야 한다.